긴급입찰 사유서

사 업 명	상용소프트웨어 통합 유지관리 용역
수요기관	게임물관리위원회(기타공공기관)
담당부서	정보서비스팀(051-720-6894)

[긴급입찰 사유]

○ 관련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
○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서 내수·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이 필요

○ 위의 사유에 따라 본 용역 사업은 제한경쟁 입찰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의 긴급입찰 사유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을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

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· 게임물관리위원회 ·

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(직인)

GRAC Compulsory Security Stamp 00506102 2021/07/26 16:52:34